(2024)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

[2024년 1월 10일 발행(1쇄)]

<table>
<tr><th>페이지</th><th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>23</td><td>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국가물류
기본계획</td><td>지역물류
기본계획</td></tr><tr><td>계획내용</td><td>~
12. ~</td><td>~
12. ~</td></tr></table></td><td>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국가물류
기본계획</td><td>지역물류
기본계획</td></tr><tr><td>계획내용</td><td>~
12. ~
13.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td><td>~
12. ~
13.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24</td><td>(2)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(법 제18조)
④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(임기 3년, 5명 이내 비상근)을 둘 수 있다.</td><td>(2)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(법 제18조)
④ 삭제</td></tr>
<tr><td>41</td><td>(4) 인증심사대행기관
① ~
㉠ ~
⋮
㉤</td><td>(4) 인증심사대행기관
① ~
㉠ ~
⋮
㉤
㉥ 인증 제도에 대한 연구
㉦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</td></tr>
<tr><td>53~54</td><td>(3)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(법 제60조의2)
~
⑥ 지원규정 : ~</td><td>(3) 전체 삭제</td></tr>
<tr><td>128</td><td>(3)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(법 제34조)
③ 환지대상자 : ~</td><td>(3)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(법 제34조)
③ 환지대상자 :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의 지정·고시일 현재 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토지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법령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.</td></tr>
<tr><td>129</td><td>④ 환지신청 :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~ 하여야 한다.</td><td>④ 환지신청 :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~ 하여야 한다.</td></tr>
<tr><td>129</td><td>⑤ 환지 방법 및 절차 : ~
1.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 :</td><td>⑤ 환지 방법 및 절차 : ~
1.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 :</td></tr>
</table>

	~ 환지의 가액 :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	~ 환지의 가액 :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
132	② 특별회계의 용도 : ~ 1. ~ 2.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	② 특별회계의 용도 : ~ 1. ~ 2.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
303	(2)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(법 제26조) ① 재계약 운송금지 : ~ ② 중개·대리의뢰 금지 : ~ ③ 허위통보 및 기준위반 운송의 주선금지 : ~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~ ⑤ 이밖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~	(2)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(법 제26조) ① 재계약 운송금지 : ~ ② 중개·대리의뢰 금지 : ~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(준용규정)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·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④ 허위통보 및 기준위반 운송의 주선금지 : ~ ⑤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~ ⑥ 이밖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~
424	(2) 점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기간 ② 점용허가기간 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~ 1. 철골조·철근콘크리트조·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: 30년	(2) 점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기간 ② 점용허가기간 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~ 1. 철골조·철근콘크리트조·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: 50년
559	10번 문제 해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~	10번 문제 해설 추가 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 하되,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(시행규칙 제16조의8 제1항). ※ ① 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나, 법 개정(2024.1.9., 시행 2024.7.10.)으로 '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'로 내용이 변경되었다.

※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. 책 출간 후의 오류, 오타 발견으로 정오표를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. 다음 인쇄 시 반영하여 출간하겠습니다.